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규정 (안 제3조)
- 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8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제16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신분 규정
-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발전과 통일정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관리·운용,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50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추세이며, 앞으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우리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6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규정(안 제3조)

다. 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8조)

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9조~제16조)

-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3)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신분 규정

마.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추진단 구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부패영향평가: 회의록 작성·비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함

라. 입법예고(2018.10.18. ~ 11. 7.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4.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실무추진단)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단은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